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박은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 혼례 및 전통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전통혼례 지원사항 및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 라. 입법예고 : 2025. 5. 30. ~ 6. 6. (7일간)/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장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전통혼례 체험 혹은 방식으로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전통혼례 지원 정책이 확대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한 전통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1 :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2곳 조례 제정 (경기도 제정 시군 : 0곳)

[표1]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5. 5. 기준)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7. 2.
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4. 14.

참고자료 2 : 남양주시 전통혼례 진행 사례

1) 궁집에서 전통혼례 (경기도 작은 축제 육성 지원사업)

- 실제 혼례를 치르지 못한 부부 2쌍에게 전통혼례 기회 제공
- 국악 공연, 퇴계원산대놀이, 전통음식 시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 진행

2) 다산부부 회혼례 재현 행사

-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유교적 의례를 재현하여 전통혼례 진행
- 다산 선생 부부의 회혼례를 앞두고 당일 세상을 떠난 것을 기려 재현되는 의례



1) 궁집에서 전통혼례



2) 다산부부 회혼례 재현 행사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 11. (생략)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 정약용문화제 회혼례 진행 사례 등을 검토해보았을 때, 전통혼례에 필요한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비용추계
 - (2023년 정약용문화제 중) 회혼례 총 2회 470만원
 - (2024년 정약용문화제 중) 회혼례 총 1회 320만원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박진범